

# 부 발 유 치 원 규 칙

제정	1981. 03. 01.
1차 개정	2010. 11. 06.
2차 개정	2011. 03. 25.
3차 개정	2013. 04. 05.
4차 개정	2021. 06. 09.
5차 개정	2023. 12. 14.
6차 개정	2024. 04. 05.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교육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명칭) 본 유치원은 “부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55에 설치한다.

## 제 2 장 교육연한, 학기와 휴원일

제4조 (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학년학기) 본원의 학기는 법 시행령 제11조 따라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 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6 조 (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원기념일 4) 하계·동계, 사계절 방학 5) 학년말 휴가 6) 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7)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 8) 토요일
2. 전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 휴업할 수 있고,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업을 할 경우 동 기간에는 교육과 원아의 등원이 정지된다.

### 제 3 장 학급편제와 원아정원

#### 제 7조 (학급편제)

1. 본원은 인가 학급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반과 방과후과정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제1항의 학급 수는 원아모집 결과에 따라 학급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이후 시간에는 인가학급 범위 내에서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 제 8조 (원아정원)

1. 연령별 학급편성 및 정원은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다.
2. 방과후과정은 원아 정원 내에 포함된 인원으로 편성한다.

### 제 4 장 교육과목 및 교육일수·교육시간

#### 제 9조 (교육과정)

1. 본원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른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의 특수성과 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2. 유치원의 교육활동은 유아의 연령, 발달 정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선정하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을 통합하고 생활 주제 교육 활동 간에 통합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 10조(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한다.

#### 제 11조(교육일수)

- 1.본원의 수업일수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

고, 연간 30일 이내일 경우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확산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관할청의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 제 12 조 (교육시간)

1일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4~5시간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은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한다. 단, 유아의 적응상태를 고려하여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 유치원의 실정에 알맞게 단축, 연장할 수 있다.

### 제 5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휴학, 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 제 13 조 (입원자격)

1. 본 원의 입학자격은 3세로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로 한다.
2. 본원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본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유아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입학한다.
  - ② 만3·4세에 입학한 유아의 경우는 재학을 희망할 경우 우선 입학을 허가한다.
  - ③ 본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호자는 유아의 친권자 또는 휴견인으로 한다.
  - ⑤ 보호자 신상에 변동이 생길 때와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입원) 입원자격자는 본 원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본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입원방법)

1. 본 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원자를 선정한다.
2. 원아모집 시 재원아를 우선 선발한다.

#### 제 16 조 (재입학/편입학/전입학)

본원으로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유치원 전·입학시 생활기록부를 해당 유치원에 송부한다.

#### 제 17 조 (휴학/자퇴/퇴학)

1.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를 받아 일정 기간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 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3.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할 때
  -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 18 조(수료 및 졸업)

1. 유치원장은 본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5세 유아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본원 소정양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2.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3.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4. 1,3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과정 이수원아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 6 장 입학금 및 수업료

제 19 조 (징수금)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유치원장과 학부모가 협의 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책정하고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 20 조 (체납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을 정지하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제 7 장 방과후과정 운영

### 제 21 조 (방과후 과정 교육 일수 및 시간)

1. 방과후 과정 교육 일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12조에 의거 매 학년도 200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및 유치원 실정, 보호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1일 교육 시간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8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그 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에 의한다.
3. 하루의 교육 시간은 수요자 희망 시간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제 22 조 (방과후 과정 학급편성 및 정원)

1. 방과후 과정 학급당 학급편성 기준은 매년 경기도 유치원 학급당 편성기준 지침을 따른다.
2. 지역 및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오후 별도 방과후 과정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3.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부부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정원 범위 안에서 일반자녀 취원을 허가한다.

### 제 23 조 (방과후 과정 교육과정)

1. 방과후 과정은 기본과정 이후 기타 교육활동(심화·특성화)과 보호 활동으로 운영한다.
2. 교육과 보호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으로 수행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제 8 장 유치원운영위원회·유치원학부모회

### 제 24 조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 합법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법 제1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거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부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 25 조 (유치원학부모회 구성·운영)

1. 유치원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9.6.18.) 제3조에 의거하여 유치원학부모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유치원학부모회는 학교학부모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부발초등학교학부모회 규정에 따른다.
3. 학부모회 임원이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 9 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신규)

제 26 조(목적)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4조 2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7 조(교육 3주체의 의무)

- 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 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8 조(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6.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7.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 29 조(조언 및 상담)

-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④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⑥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0 조(주의 및 훈육)

-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을 할 수 있다.
- ④ 원장과 교원은 제34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5조 제31항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 ⑤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 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⑥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⑧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1 조(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32 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33 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4 조(이의제기)

-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 10 장 학칙의 개정 절차

제 35 조 (유치원 원칙의 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규칙개정안을 작성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 부 칙

1. 본 원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원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